재외동포청 공고 제2026 - 61호

재외동포청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재외동포청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재외동포청장

1 임용예정인원 (4개 직위, 총 4명)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101	서기관	1명	국가공무원법상 정년 적용	교류협력국 동포인재육성과 (인천)
102	전문임기제 나급	1명	채용일로부터 '28. 9. 30.까지	교류협력국 차세대동포연수과 (인천)
201	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채용일로부터 2년	교류협력국 차세대동포정책과 (인천)
202	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채용일로부터 2년	교류협력국 동포경제지원과 (인천)

※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 불가)

※ 일반/전문임기제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정원의 존속기한이 연장될 경우에 한해,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임용예정직무

- 임용예정직무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재외동포청 직제,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일반임기제 및 전문임기제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적용 제외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6.11.27) 기준]

- 채용 예정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은 [붙임2]의 지원코드별 직무기술서 참고

※ 아래 임용예정직급별 응시자격요건 중 택1 하여 응시

임용예정직급	응시자격 요건	
서기관 (4급)	경력	① (민간 경력)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관련 분야에서 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공무원 경력) 임용예정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공무원 경력) 임용예정직렬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시험령 별표 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전문임기제 나급	경력	① (민간 경력)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민간 경력)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공무원 경력)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경력	① (민간 경력)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민간 경력) 학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공무원 경력)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경력)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경력기준 중 가장 유리한 요건을 반드시 택 1하여 응시하십시오**

- 경력①/경력②/경력③ 중 택1

※ **응시원서 제출 이후 응시자격요건 변경은 불가하며, 자격요건 기재 착오 및 중복선택, 미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6.11.27.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 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된 건에 한해서만 인정**(증명서 발급담당자, 성명, 회사 직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에는 ⑴**근무기간(휴직기간도 기재)** ⑵**근무형태(주근로시간 및 전임여부)** ⑶**담당업무(예: 건축설계 업무 등)**가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근무형태, 담당업무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업무분장표, 채용계약서, 임용약정서 등 보완자료도 함께 제출 요망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재직증명서도 필수 제출
- 경력 요건의 경우,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 필요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 관련 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중증장애인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5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경력' 요건의 경우,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을 합산할 수 없음

※ [예] 관련분야 '공무원(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 1년'과 '민간경력 2년'을 합산하여 '관련분야 경력 3년'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시험령 제27조제4항)

※ 근무형태는 주당 근무시간(예. 주00시간) 기재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심의회(3인 이상)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 공무원임용규칙 [별표1],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별표1]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함
-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함(근무기간이 긴 경력)
- 대학 조교 경력과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은 포함
- 프리랜서, 자원봉사, 단체활동, 개인사업자 경력 등의 경우 당해 직위와 관련된 일정 규모·수준 이상의 연구·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 경력의 일부를 인정

※ 필요시 별지서식 제7호 양식 활용 업무분장표, 채용계약서 등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 '개인사업자' 경력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 개인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하며, 사업자등록증명(폐업 시 폐업사실증명원) 및 해당 기간 매출·소득액, 계약서 및 포트폴리오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심의회 판단에 따라 일정 범위 경력을 인정할 수 있음

- '경력' 요건 중 **'관리자'**란 법인(외국법인 포함)의 장,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부서단위 책임자를 말함

[부서단위 책임자의 기준]

① **(조직 체계)** 정식 직제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이어야 함(팀장, 부장, 책임 연구원 등)

Ⅰ) 조직도 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서는 불인정(임시조직·TF팀 등)

Ⅱ) 부서 정원이 3명 이상의 정규직으로 구성될 것(위탁업체 직원, 인턴, 임시직 제외)

② **(업무 권한)** 부서장으로서 인사권(직원평가 및 업무조정 등)과 예산집행권 등 전결권을 행사하여야 함

③ **(근무 형태)** 주 40시간 이상 전임직으로 상근하여야 함

④ **(증빙의무)** ①~③의 요건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경력조회과정에서 위 사항(관리자 직명, 관리직무 내용, 관리대상 정규근무 직원수 등)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다. 우대요건 등 [원서접수 마감일('26.10.23.) 기준]

우대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 근무경력 - (공통)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 소지 - (공통) 공인영어능력검정시험
가산점	- (공통)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3급이상(급수별 차등 우대)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우대요건 및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6.10.23.)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우대요건 관련

①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 (근무기간에 따른 차등 우대)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경력 및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전 경력에 대해서는 우대하지 않으며 응시자격 충족 이후 직무분야 관련 경력(공무원경력+민간경력 통산)으로 평가

**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가능한 것에 한하고, ①**근무기간**(휴직기간도 기재) ②**근무형태(주근로시간 및 전임여부)** ③**담당업무(예: 송무 업무 수행 등)**가 경력증명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②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 이상 학위 우대(학위별 차등우대)**

※ 우대요건으로 명시한 직무분야 관련 학위에 한해 인정함 (관련 학위는 붙임2 직무기술서 참고)

※ 전문임기제 및 임기제의 경우 응시요건으로 활용한 학위와 중복 가능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관련 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별지서식 제9호 제출)

※ 복수 소지시 유리한 1개의 학위만 우대

③ **공인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별 차등우대, 중복 제출 시 유리한 1건만 인정)

- 영어성적 : 아래 점수(등급) 이상 자에 한해 점수(구간)별 차등 배점

구분	우대요건 대상 범위
영어	TOEIC 700점 이상 / TOEFL(IBT 71점 이상) / TEPS 340점 이상 / FLEX (영어) 625점 이상 / G-TELP Level 2의 65점 이상

* '23.10.24.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어학시험 중 원서접수 마감일('26.10.23)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성적으로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어학성적 사전 등록'에 등록된 성적 또는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미등록한 경우에는 '26.10.23.까지 발표된 성적 중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6.11.27.)까지 유효한 성적이어야 함 (자체 유효기간이 없는 시험은 '23.10.24. 이후 실시한 시험 성적에 한해 인정)

** 유효기간 경과시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 확인이 되지 않으며,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 가산점 관련 (전분야 공통)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소지자(등급별 차등 우대)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등급별로 차등 우대

☞ 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 관련 사항은 "붙임2" 참조

[‘경력’요건 응시자 참고사항]

※ 경력기준 요건별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음

구분	채용자격요건(경력기준)	자격요건	우대요건1
일반행정직 행정주사	경력1. 관련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민간 경력만 인정**	자격요건 충족 이후 민간, 공무원 경력 인정
	경력2. 임용예정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경력3. 임용예정직렬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시험령 별표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공무원경력)	**공무원 경력만 인정**	

구분	채용자격요건(경력기준)	자격요건	우대요건1
전문임기제 나급	경력1.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경력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민간 경력만 인정**	자격요건 충족 이후 민간, 공무원 경력 인정
	경력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공무원 경력만 인정**	

※ (우대요건1) ‘자격요건으로 활용된 경력’ 및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전’ 경력에 대해서는 우대하지 않음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결정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붙임 2)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일 때에는 형식심사 진행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서류심사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⑤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평가방식)** 응시번호 순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하는 개별면접 실시

 ※ 다만, 4급 응시자의 경우 면접시험 당일 개별면접 전 '과제부여 및 추가 발표' 실시 예정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6.10.13.(화) ~10.23.(금)	'26.10.21.(수) 09시 ~ 10.23.(금) 18시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gongmuwon.gosi.kr)	'26.11.20.(금) 예정	'26.11.27.(금) 예정	'26.12.11.(금) 예정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재외동포청 누리집,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나라일터에 게재 예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6. 10. 21.(수) 09시 ~ 10. 23.(금) 18시
 ※ 응시수수료 결제까지 완료하여야 응시원서 접수가 완료되는 점 유의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인터넷으로 접수(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주소: https://gongmuwon.gosi.kr
 ※ 응시원서 접수 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수수료가 면제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민법」 상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제출 서류 미비 및 기재 누락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귀속
※ 접수 기간에는 응시 내용 변경이 가능하나, 최종 제출을 완료하거나 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 및 추가 제출할 수 없음

나. 제출서류 ☞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 : **모든 서류는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함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응시원서 1부	○ 인터넷으로 작성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1부	○ 별지서식 1호
	이력서 1부	○ 별지서식 2호
	자기소개서 1부	○ 별지서식 3호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지서식 4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5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6호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본으로 발급 및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경력(재직)증명서 1부	○ 별지서식 7호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대학교 이상 학위 및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학위논문요약서(석사·박사) 및 학위논문 사본 각 1부	○ 별지서식 8호
	동일계통학과 확인서 1부	○ 별지서식 9호
	공인영어능력검정시험 증빙서류 1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증빙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는 1회(1개 선발단위, 1개 응시자격요건)만 제출할 수 있으며, 다른 선발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중복지원 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전체 지원건수가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 경력, 학위,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한 모든 내용은 서류평가 결과 발표 후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실 여부를 해당 기관에 직접 조회·확인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증빙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를 통해 평가에 반영된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거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합격이 무효·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할 때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는 필히 첨부하여야만 인정됩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위증명서 등 증빙서류에 대해서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통(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희망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 서식 제10호)를 작성하여 이메일(dkssud8599@korea.kr)로 제출하시면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최종합격자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6. 12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 공통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른 정년 적용
 - 일반임기제 : 임용일로부터 2년
 - 전문임기제 : 임용일로부터 2028.9.30.까지

※ 일반임기제 및 전문임기제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적용 제외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호봉을 산정하고,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하게 되며, 직급별 보수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 참조
 - 채용직위 연봉 한계액

구 분	2026년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상한액	하한액
전문임기제 나급	86,606	57,708
일반임기제 7호	68,922	33,075

※ 민간경력 등을 기초로 호봉을 획정하고, 획정된 호봉 및 연봉책정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책정 범위 내에서 기본연봉 책정

※ 연봉한계액은 임용시점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9 안내 및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시작 전이라도 응시자가 제출한 증명서 등 각종 제출자료의 진위여부를 확인·검증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 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3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전보가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전보가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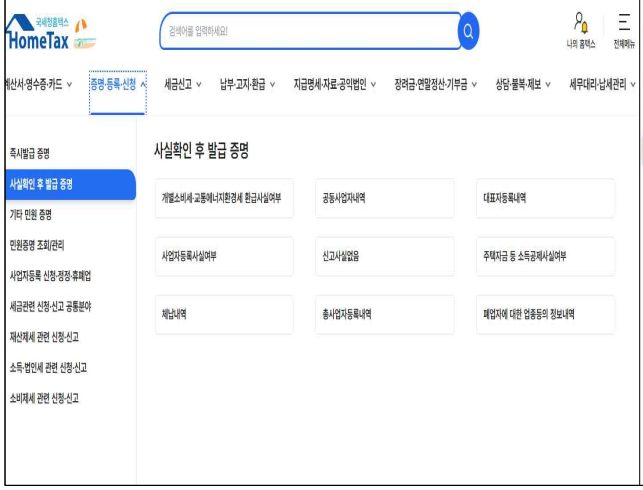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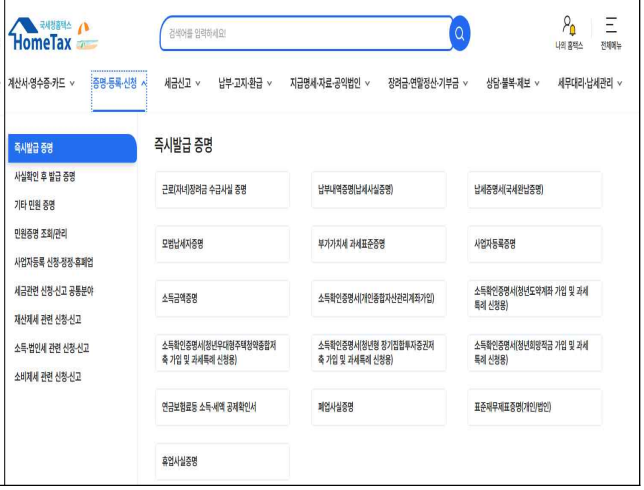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증명·등록·신청 → 사실확인 후 발급·증명 →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증명·등록·신청 → 즉시발급 증명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재외동포청 운영지원과(032-585-3119)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지원코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101	재외동포 장학·청년인재 기획·운영	서기관	1명	동포인재육성과 (인천)

주요업무	○ 재외동포 장학사업 정책 기획 및 제도 수립 총괄 ○ 재외동포 청년인재 육성 정책 수립 및 시행 ○ 장학사업 시스템 고도화 및 운용 프로세스 개선 ○ 기관 내 업무 분장에 의한 관련 업무 처리
필요역량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 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계획관리능력, 전문성, 논리적 사고, 대인관계
필요지식	○ 재외동포 장학사업 운영 현황 및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전문적 지식과 충분한 이해 ○ 사업 기획 및 제도 수립을 위한 관리·총괄 능력 및 전문적 행정 지식 ○ 유관 부처·기관 대상 업무 조율·갈등 관리·전략적 의사소통 능력 ○ 재외동포 정책·사업 및 관련 행정 절차 전반에 관한 지식
응시자격요건	※ 아래 응시자격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가능
응시자격요건 – 경력	1.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관련 분야에서 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 경력) 2. 임용예정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 경력) 3. 임용예정직렬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시험령 별표 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공무원 경력) **※ 관련분야 경력: 장학·학업지원 등 교육 지원사업 기획·총괄 / 재외동포 관련 교육·복지사업, 기획, 행정 분야 근무경력**
우대요건	①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 ②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 소지 ※ **관련 분야 학위 : 교육·상담 관련학과**(교육심리학 상담학 등), **행정·경영 관련학과**(행정학, 정책학, 경제학, 경영학 등), **정치·외교 관련학과**(정치학, 국제정치학 등), **사회·역사 관련학과**(이민사, 사학, 사회학 등) ③ 공인영어능력검정시험 ※ 구체적인 우대요건은 공고문 참조
가산점	①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3급 이상(급수별 차등 우대)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우대요건 및 가산점"은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지원코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102	차세대 모국 초청 연수 (모국 초청 연수 현장 운영 감독)	전문임기제 나급	1명	차세대동포연수과 (인천)

주요업무	○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연수 현장 운영 감독 ○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연수 품질·안전관리 자문 및 총괄 ○ 기관 내 업무 분장에 의한 관련 업무 처리

필요역량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 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계획관리능력, 전문성, 논리적 사고

필요지식	○ 차세대동포 현황 및 모국 연수사업 운영을 위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 ○ 방한 초청 연수/행사 기획·운영, 연수 안전 인증제 관련 계획 수립 및 추진 능력 ○ 차세대동포 초청 연수(행사) 사업 계획에 따른 적절한 이행 능력 ○ 재외동포 정책·사업 및 행정 절차 전반에 관한 지식

응시자격요건	※ 아래 응시자격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가능	
	경력	1.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 경력)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 경력)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 경력)
		※ 관련분야 경력: 초청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 기획·총괄 / 교육 분야 국제 교류 협력·지원 / 행사·연수 분야 안전관리 계획 수립·품질관리 근무경력 / 재외동포 관련 연수사업, 기획, 행정 분야 근무경력
우대요건		①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 ②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 소지 ※ **관련 분야 학위 : 교육·상담 관련학과**(교육심리학, 상담학 등), **보건·안전 관련학과**(산업안전공학, 보건행정학 등), **행정·경영 관련학과**(행정학, 정책학, 경제학, 경영학 등), **정치·외교 관련학과**(정치학, 국제정치학 등)**, 사회·역사 관련학과**(이민사, 사학, 사회학 등) ③ 공인영어능력검정시험 ※ 구체적인 우대요건은 공고문 참조
가산점		①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3급 이상(급수별 차등 우대)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우대요건 및 가산점"은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지원코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201	차세대동포 정책·사업 수립 지원	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차세대동포정책과 (인천)

주요업무	○ 차세대동포 정책·사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지원 - 차세대동포 정책·사업 수요 파악, 국내외 동향 및 사례 조사·분석 ○ 차세대동포 지원사업 운영 및 유관기관·단체 협력 실무 지원 ○ 차세대동포 사업 성과관리, 예산 집행·정산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지원 ○ 기관 내 업무 분장에 의한 관련 업무 처리

필요역량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 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전문성, 분석력, 계획관리능력, 논리적 사고

필요지식	○ 차세대동포 정책 및 지원사업 업무 전반에 대한 일반적 이해 ○ 차세대정책·사업 계획 수립, 조사·분석 및 성과관리 절차에 대한 이해와 지식 ○ 기관·단체 대상 네트워크 구축·협력 지원 활동 경험 ○ 재외동포 정책·사업 및 행정 절차 전반에 관한 지식

응시자격요건	※ 아래 응시자격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가능	
	경력	1.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 경력) 2.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 경력)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 경력)
		※ 관련분야 경력: 해외 입양동포 네트워크 구축·교류협력 및 권익신장 지원 / 재외동포 관련 교류 협력·지원 사업, 기획, 행정 분야 근무경력
우대요건		①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 ②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 소지 ※ **관련분야 학위 : 사회복지·아동·가족 관련학과**(사회복지학, 아동복지학, 아동학, 가족학 등), **행정·경영 관련학과**(행정학, 정책학, 경제학, 경영학 등), **정치·외교 관련학과**(정치학, 국제정치학 등), **사회·역사 관련학과**(이민사, 사학, 사회학 등) ③ 공인영어능력검정시험 ※ 구체적인 우대요건은 공고문 참조
가산점		①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3급 이상(급수별 차등 우대)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우대요건 및 가산점"은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지원코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202	동포경제지원 사업 수립·시행 및 네트워크 관리	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동포경제지원과 (인천)

주요업무	○ 동포경제지원 사업 수립 및 시행 - 기업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기획·운영 ○ 전시사업 성과추적 및 사후관리 ○ 동포경제단체 및 네트워크 관리 지원 ○ 기관 내 업무 분장에 의한 관련 업무 처리

필요역량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 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전문성, 분석력, 계획관리능력, 논리적 사고

필요지식	○ 재외동포 경제 네트워크 구축·관리 활동 경험 ○ 기업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기획 및 운영에 대한 일반적 이해 ○ 비즈니스 상담 실적 및 후속 성과 추적 관리 전반에 대한 이해와 지식 ○ 재외동포 정책·사업 및 행정 절차 전반에 관한 지식

응시자격요건	※ 아래 응시자격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가능	
	경력	1.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 경력) 2.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 경력)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 경력)
		※ 관련분야 경력 : 재외동포 경제인·단체 관련 국제교류 협력·지원 사업 / 재외동포 관련 교류 협력·지원 사업, 기획, 행정 분야 근무경력
우대요건		①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 ②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 소지 ※ **관련분야 학위 : 국제·지역학, 행정·경영 관련학과**(행정학, 정책학, 경제학, 경영학 등)**, 정치·외교 관련학과**(정치학, 국제정치학 등) ③ 공인영어능력검정시험 ※ 구체적인 우대요건은 공고문 참조
가산점		①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3급 이상(급수별 차등 우대)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우대요건 및 가산점"은 원서접수마감일까지

붙임 3 제출서류 안내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연번	구 분	내 용
1	(필수) 응시원서 1부	ㅇ 인터넷 접수 시 작성
2	(필수)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1부	ㅇ 응시자별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총괄표 작성 ㅇ 각 응시코드에 따라 **별지서식 제1호** 작성
3	(필수) 이력서 1부	ㅇ **별지서식 제2호** 작성 ㅇ 직위별 응시자격, 우대요건, 가산점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4	(필수) 자기소개서 1부	ㅇ **별지서식 제3호** 작성 ㅇ A4 2매 이내로 작성
5	(필수) 직무수행계획서 1부	ㅇ **별지서식 제4호** 작성 ㅇ A4 요약서 1매 + A4 4매로 작성 (총 5매 이내)
6	(필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ㅇ **별지서식 제5호** 작성 ㅇ 자필 서명 필수
7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ㅇ **별지서식 제6호** 작성 ㅇ 자필 서명 필수
8	(필수) 주민등록 초본 1부	ㅇ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본으로 발급 ㅇ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된 초본을 제출하되, 미포함 시 병적증명서 추가 제출 ㅇ (개명한 응시자의 경우) 개명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제출
9	(필수) 경력(재직) 증명서 1부	ㅇ 근무기관의 자체 증명서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나, 별지서식 제7호의 항목(담당업무 등)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별지서식 제7호** 활용 ㅇ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 새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공고일 이전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와 함께 '공고일 이후 발급된 4대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 시 증명서 발급일 기준으로 경력 인정 ㅇ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ㅇ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필요시 별지서식 제7호 활용)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연번	구 분	내 용
10	**(해당자)** 학위 및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ㅇ 해당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ㅇ 전형위원 제척 등을 위해 ①졸업증명서 ②직무분야 관련 학사 이상 소지자의 경우 학위증 ③수료증명서 등 제출 ㅇ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11	**(해당자)** 학위논문요약서(석사·박사) 및 학위논문 사본 각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ㅇ 주요내용 요약은 3장 이하로 작성(논문 전체본 제출 불필요) ㅇ 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별지서식 제8호) 및 논문 표지·목차·서론 사본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제출 ※ 우대요건과 관련없는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제출 불필요 ㅇ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12	**(해당자)** 동일계통학과 확인서 각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 우대요건에 명시된 관련 학과와 명칭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별지서식 제9호 활용 및 제출
13	**(해당자)** 공인영어능력검정시험 증빙자료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14	**(해당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증빙자료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15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증빙용도 제출

* 제출서류 및 관련 증빙서류는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각각 **1개의 PDF 파일**을 압축하여 **압축파일(zip)**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파일 용량은 10MB까지 가능)
* 학위논문요약서 및 학위논문 사본은 **별도의 1개의 PDF 파일(파일명 : 학위논문(본인이름))**로 제출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 필)을 함께 첨부**

<별지서식 제1호>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성 명	생년월일	응시부처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00.00.00	재외동포청		

목 록	제출여부
1. 이력서 1부	□ 제출 □ 미제출
2. 자기소개서 1부	□ 제출 □ 미제출
3.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제출 □ 미제출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제출 □ 미제출
5.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제출 □ 미제출
6. 주민등록초본 1부(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제출 □ 미제출
7.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제출 □ 미제출
8. 학위 및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제출 □ 미제출
9. 학위논문요약서(석사·박사) 및 학위논문 사본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 제출 □ 미제출
10. 동일계통학과 확인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제출 □ 미제출
11. 공인영어능력검정시험 증빙서류 1부 – 해당자에 한함	□ 제출 □ 미제출
1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증빙서류 1부 – 해당자에 한함	□ 제출 □ 미제출
13.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제출 □ 미제출

응시자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2026. . .

성명 : (서명)

재외동포청장 귀하

<별지서식 제2호> (예시)

이 력 서

1.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지원 코드		응시 자격 요건	경력			성명	
					경력1 □	경력2 □	경력3 □		

※ 응시자격요건은 지원코드별 직무기술서 응시자격요건 중 경력 순서에 따르며, 반드시 1개만 체크, 중복체크 불가

2. 응시자격

※ 1번에서 선택한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은 삭제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경력	ㅇㅇㅇㅇ (ㅇㅇ과)	19.1.1 ~ 22.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20. 5.1~12.31(질병휴직)	과장 (4급)		전임 /비전임 (주 00시간 근무)
학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 응시자격 중 학위 작성란의 경우에는 전문임기제 및 임기제 응시자격요건 중 '경력2'로 응시하는 경우에만 기입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중증장애인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5년,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3. 우대요건

※ 선택한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관련분야 근무 경력(공무원,민간 경력 합산가능)
※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
우대경력	ㅇㅇㅇㅇ (ㅇㅇ과)	22.12.6 ~ 25.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23.3.1~23.7.30(육아휴직)	과장 (4급)	상세히 기재 필요	전임/ 비전임 (주 00시간 근무)
	ㅇㅇㅇㅇ (ㅇㅇ과)	26.1.1 ~ 26.8.15	과장 (4급)	상세히 기재 필요	전임/ 비전임 (주 00시간 근무)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학위	건축	'00.00.00	건축학 학사/석사/박사

	어학시험명	등급	취득점수	응시일	발급기관	발급번호
공인영어능력검정시험						

4. 가산점 ※ 해당 없을시 삭제

	발급기관	발급일	인증등급	인증번호
한국사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통사항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지원코드 : 응시하고자 하는 지원코드 작성

(예) 201

③ 응시자격요건 : 응시하고자 하는 지원코드의 응시자격 요건 중 선택

※ 우대요건 등을 확인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응시자격 1개만 선택

④ 응시자격(학위) : 해당자(전문임기제 및 임기제)에 한하여 작성

【 응시자격 】 : 해당사항 작성

경력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예. ㅇㅇ분야 경력 요건 중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응시하는 자가 관련 직무분야에서 13년의 경력이 있을시,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8년의 경력은 '2.응시자격'의 경력란에 기입하고,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5년의 경력은 '3.우대요건'의 경력란에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과거 경력부터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기간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예시) 행정주사, 전산주사보, 사원, 공무직, 계약직, 기간제, 시간제, 프리랜서, 인턴 등
- 근무형태는 **'전임'(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비전임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주 근무시간'의 개념은 초과(휴무)근무를 포함하여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아닌 표준(기본)근무 시간을 의미함
 - 시간제 근무자인 경우 : '주 근무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별도 첨부
 * 예시) 통상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 우대요건 】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경력 외 초과경력만 기재

-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과거 경력부터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기간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전임'(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비전임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예시) 통상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학위 직무분야 관련 학위

- 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마감일('26.10.23)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학위종류·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전공·복수전공 인정, 부전공 및 수료자는 불인정
- 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기재

※ 석·박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학위논문요약서 제출

어학(영어) 공인영어능력검정시험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어학성적'은 '23.10.24.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어학시험 중 원서접수 마감일('26.10.23)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성적으로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어학성적 사전 등록'에 등록된 성적 또는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미등록한 경우에는 '26.10.23.까지 발표된 성적 중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6.11.27.)까지 유효한 성적이어야 함 (자체 유효기간이 없는 시험은 '23.10.24. 이후 실시한 시험 성적에 한해 인정)

※ 유효기간 경과시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 확인이 되지 않으며,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 글씨 크기는 돋움 11p, 가는 글씨로 작성(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여러 장으로 작성)

※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경력·학위 및 기타 우대요건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관련 증빙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야 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 필) 함께 첨부

<별지서식 제3호> (예시)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지원코드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작성요령

- 현재까지 귀하가 담당했던 업무에서의 실적을 사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
- 분량은 요약서 A4용지 2매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글씨 휴먼명조 13p, 줄간격 150%, 용지 좌우 여백은 각각 20mm, 상하 여백은 각각 15mm, 머리말 및 꼬리말은 각각 10mm로 작성)
-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본인 서명 포함

<별지서식 제4호> (예시)

직무수행 계획서

성 명		지원코드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작성요령

-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분야 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① 직무에 대한 이해, 소견 및 응시 취지 ②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③ 구체적인 실천방안 순으로 자유롭게 기술
- 분량은 요약서 A4 1매 + A4용지 4매(총 5매 이내)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글씨 휴먼명조 13p, 줄간격 150%, 용지 좌우 여백은 각각 20mm, 상하 여백은 각각 15mm, 머리말 및 꼬리말은 각각 10mm로 작성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본인 서명 포함

<별지서식 제5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재외동포청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수상실적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재외동포청장 귀하

<별지서식 제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병역사항,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 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재외동포청장 귀하

<별지서식 제7호>

경 력 증 명 서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경력 사항	근무기관 (부서명)	직위 (직급)	담당업무 (가급적 상세히 기재 요망)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	
				시작일	종료일		
						주40시간 근무시 상근, 그 이외에는 근무시간 표시	
	비고	휴직기간, 상벌사항(포상·징계) 등 기재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직인)

주소

연락처

발급담당자	
소속	
직위	
성명	(인)

<별지 서식 제8호>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학위논문요약서(석사·박사)

성 명	직무분야	응시직급

학위개요	○ 논문제목 ■ 한글명 : ■ 영문명 : ○ 심사 년월일 : ○ 지도교수 :

주요내용　요약

Ⅰ. 연구목적
1.
가.
1)
가)
(1)
(가)

Ⅱ. 연구내용

Ⅲ. 연구결과의 활용도(구체적으로)

본 논문요약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2026.　　.　　.

응시자 :　　(인)

※ 박사 및 석사 학위 건별로 작성 / 주요내용 요약은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논문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별지서식 제9호>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동일계통학과 확인서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 력	대학교 대학(학부) 학과 년도 졸업 대학교 대학원 학과 전공 년도 졸업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대학원)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동 학과는 「2026년도 재외동포청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문에 기재된 관련학과 중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확인합니다.

※ 학교연락처 : 담당자 ○○○ (전화 :)

2026년 월 일

담당자 소속 직급 성 명 (날인)

확인자 소속 직급 성 명 (날인)

○ ○ 대학교 총장(단과대학장, 대학원장)(직인날인)

재외동포청장 귀하

<별지서식 제10호>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후 메일(dkssud8599@korea.kr)로 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재외동포청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